제 113호

행정명령(EXECUTIVE ORDER)

법규의 특정 조항의 정지 또는 수정의 지속

2013년 6월 28일에 본인은 Broome, Chenango, Clinton, Delaware, Essex, Franklin, Herkimer, Madison, Montgomery, Oneida, Otsego, Tioga, Schoharie, St. Lawrence 및 Warren 카운티에 재난 비상을 선언하는 행정명령 제103호를 발행하였습니다.

2013년 7월 5일에 본인은 추가적으로 Niagara 카운티에 재난 비상 사태를 선포하기 위해 행정명령 제103호를 수정한 행정 명령 제108호를 발령하였습니다.

행정법 제29-a조는 법령, 지방법, 조례, 명령, 규칙 또는 규정의 조항, 또는 그 일부를 준수하는 것이 재난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경우, 법령, 지방법, 조례, 명령, 규칙 또는 규정, 또는 그 일부의 정지, 변경 및 수정을 허락하고 있습니다.

본인은 2013년 7월 1일에 교통 인프라 복구 관련 법률 및 규제 조항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명령 제104호를 발령하였습니다;

본인은 2013년 7월 1일에 주정부 계약 및 주정부 시설물 수리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제 조항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명령 제105호를 발령하였습니다.

2013년 7월 31일에 본인은 행정명령 제104 및 105호로 명령된 법률 및 규제 조항 정지를 2013년 8월 30일까지 지속하는 행정명령 제111호를 발령하였습니다;

행정법 제29-a조에는 법률의 정지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모든 관련 사실 및 형편을 재고려하여 정지를 추가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;

이제, 그러므로 본인 ANDREW M. CUOMO 뉴욕주 지사는 행정법 제2-B조의 제29-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그리고 모든 관련된 사실 및 상황을 재고려한 후에, 행정명령 제104 및 105호로 명령되고 행정명령 제111호로 연장된 법률 및 규제 조항들의 정지를 2013년 8월 30일부터 2013년 9월 29일까지 지속할 것을 명령합니다.

2013년 9월 6일 Albany시에서 주 옥새 및 본인의

자필로 서명합니다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

Korean